

「2023년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」 수요기업 모집 공고(1차)

(재)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평택 소재 R&D 역량을 보유한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「2023년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」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3년 2월 27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3년 IP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3. 08. 24.
- 지원대상 : 연구개발 및 IP 창출 역량을 보유한 평택 소재(본사, 등록 공장 등) 기술기반 중소·벤처기업

※ 공고일 기준 평택시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' 설치·운영

지원제외

- 채무불이행 및 부실기업의 경우(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, 법정관리 등)
- 직전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부도, 폐업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기업 등 정부,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
-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내용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, 유관기관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
| | |
|-----------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기업 및 중견기업, 도소매 업종 등 ·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· 제출서류 미비 등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※ 지원기업 선정 후 사후 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(사업기간 중 본사 관외 이전,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) ·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500%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· 출원 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중간처리 비용 · 타 기관에서 동일기술로 기지원을 받거나 국가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· 원출원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 (원출원건 만 지원 함) ※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환수 |
| 선정기업 의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및 선정된 기업이 상기 '지원제외' 대상에 해당되거나 사업 도중이라도 해당 될 경우, 반드시 주관기관에 사전/사후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 할 시 책임은 기업에 귀속시킴 · 본 사업의 선정기업은 사업 기간 내 사업장을 평택시 외 지역에 이전할 수 없으며, 사업장 이전 시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, 지원금은 전액 반환조치 함. |

□ 지원내용 : 전체 소요비용의 80%이내 지원, 기업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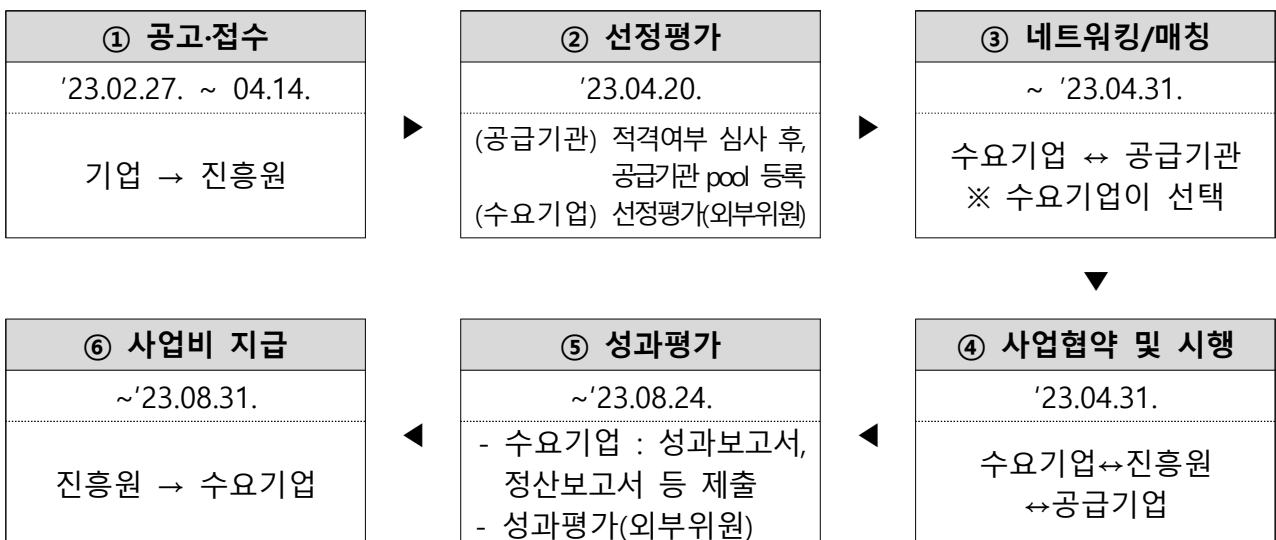
※ 예) 총 비용 250만원일 경우, 지원금 200만원(80%), 기업부담금 50만원(20%)

| 세부 프로그램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IR 및 경영컨설팅 지원 |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및 경영전략 마련 등 | 기업당 최대 2백만원 (5개사 내외) |
| 2. IR자료 제작 지원 | 투자유치를 위한 IR자료 제작 지원 ※ PPT, 동영상 등 | 기업당 최대 2.5백만원 (5개사 내외) |
| 3. 기술지도 및 기술성 분석 |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성, 기술성 분석자료 제공 | 기업당 최대 3백만원 (5개사내외) |
| ☞ 사업비 지급방법 | | |
|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공급기업 (기관) 선택 (수요기업 → 공급기업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3자간 협약 체결 (수요기업-진흥원 -공급기업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비용 선 지급 (수요기업 → 공급기업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성과평가 (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지원한도 내 사업비 지급 (진흥원 → 수요기업) </div> </div> | | |
| 4. IP창출 지원 | 특허, 실용신안 등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| 기업당 최대 1.5백만원 (5개사) |
| ☞ 사업비 지급방법 | | |
|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특허법인 등 선택 (수요기업 자율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협약 체결 (수요기업 -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비용 선 지급 (수요기업 → 특허법인 등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성과평가 (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지원한도 내 사업비 지급 (진흥원 → 수요기업) </div> </div> | | |

2 선정방법

- 심사방법 : 서류검토, 서면평가
 - 평가위원 구성 : 기술 및 경영분야 외부전문가 총 5인 이내
 - 선정기준 :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, 고득점 순
- 심사기준
 - 기업의 비전과 목표, 성장 가능성
 - 기술(제품)의 품질, 서비스 경쟁력 등 우수성
 -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, 투자가능성

3 추진일정



- 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공급기업(기관) 주요 실적 및 경력 등을 참여기업에 송부 후, 수요기업에서 희망 공급기업(기관) 선택(1~2순위)
- ※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, 불성실 수행이나 사업내용 미이행, 사업비 부정사용 등으로 판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

4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교 부 처 :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www.pipabiz.or.kr)
- 접수기간 : ~ 2023.04.14.(금), 17:00까지
-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(직인 날인) 접수
- 제 출 처 :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9길 37, 4층 (재)평택산업진흥원 (408호) 기업지원팀 담당자 앞
- 문 의 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
 - 김희태 주임연구원(☎ 070-8874-7114, ✉ htkim@pipabiz.or.kr)
- 제출서류

| 연번 | 제출서류 | 제출부수 | 비고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1 | 사업신청서 | 원본 1부/사본 7부 | 붙임 1 |
| 2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원본 1부 | 붙임 2 |
| 3 | 서약서 | 원본 1부 | 붙임 3 |
| 4 | 직전년도 재무제표 (국세청 홈택스 등) | 사본 1부 | |
| 5 |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해당 시) | 사본 1부 | |
| 6 | 국세/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| | |
| ※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※ 필요시, 평택시 내 중소기업 소재지 확인서류 추가제출 | | | |

5 유의사항
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수요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재단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,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관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-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,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